

# 일반투자자 전환신청서

본인은 하나은행과 장외 파생상품을 거래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전문투자자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일반투자자로 취급 받기를 신청합니다. 본인은 이러한 투자자 유형의 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어떠한 조연도 받지 않았으며, 이러한 신청이 본인의 전적인 의사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결정된 것임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일반투자자로 분류되는 경우 위험회피(헤지)목적 이외의 장외 파생상품 거래 및 일반투자자가 거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위험회피(헤지)목적의 장외 파생상품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신청에 의하여 본인에게 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투자자를 위한 보호규정이 적용된다는 사실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일반투자자로서의 분류, 위험회피(헤지)목적으로의 제한 및 일반투자자 관련 보호규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거래의 제한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본인에게 발생하는 모든 위험 및 손실 또는 거래상 불편 등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 1. 고객유형: 다음에 해당하는 하나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지방자치단체 (2) 해외 주권 상장법인
- (3) 전문투자자로 기전환 신청 · 등록된 법인 또는 개인
- (4)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 (5)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제외)을 관리 · 운용하는 법인
- (6) (1) ~ (5)에 준하는 외국인

## 2. 신청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적:  
주권상장 거래소명:  
설립근거법:

### [신청인 정보]

고객명:  
대표이사: (법인감)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고객번호):  
신청 담당자 성명: (서명/인)  
신청 담당자 생년월일:

주식회사 하나은행 \_\_\_\_\_ 지점/부 \_\_\_\_\_

